

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'99-43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8. 13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개정이유

상위법인 주차장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근거법령의 일부가 삭제되어
관련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부설주차장외에 따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는자에 대하여
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알선
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(법 제21조제3항)
- 조례에 법 제21조제3항을 인용한 제4조제3호 및 제9조를 개정

개정근거

- 주차장법 제21조 (법률 제5902호, 1999. 2. 8)
- 조례·규칙·규정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

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금

제9조중 “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”을 “법 제21조제1항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 (세출)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<u>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,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외 보조금</u> <p>제9조 (보조)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하고자 할 때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.</p>	<p>제4조 (세출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<u>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금</u> <p>제9조 (보조)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하고자 할 때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.</p>